

제347회 임시회
2016. 4. 27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9일

3. 개정이유

- 충북개발공사 위·수탁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타 시도 개발공사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북개발공사의 위·수탁 사업범위 조정(안 제6조)
 - 종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⇒
 - 개정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 위탁사업

5. 검토의견

- 충북개발공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됨.
- 동법 제3조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기본원칙으로,
 - 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·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

경제를 위축시키거나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,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충북도지사가 발의한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현행 조례가 충북개발공사의 위·수탁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, 이를 타 시·도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임.

※ **충북개발공사의 위·수탁 범위 조정(안 제6조)**

종전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⇒

개정) 국가, 지방자치단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 위탁사업**

- 물론 상위법령에서 지방공기업의 위·수탁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, 다만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의 기본원칙 수준에서 선언적 의미의 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으며,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또한, 조례안 개정 이유에 제시된 것처럼 타 시·도의 경우,
 - 인천시의 경우만 현행 충북도와 동일하게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”으로 위·수탁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,
 - 대구, 광주 등 6개 지역은 “공공단체”를 위·수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,
 - 부산, 전남은 “공공기관”을,
 - 충남, 전북, 경북은 “그 밖의 자의 사업”으로 규정하여 위·수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.
- 여기서, 부산, 전남 지역 조례에 규정된 “공공기관”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공시하는 기관으로,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기관임.

※ '16년도 공공기관 현황 :

총 323개 (공기업 30, 준정부기관 90, 기타공공기관 203)

- 그리고, 대구, 광주 등 6개 지역 조례에 규정된 “공공단체”는 명확한 법적 정의규정이 없고,
 - 다만 통념적으로, “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생활영역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해 포괄적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법상 단체, 공재단, 영조물법인으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음.
 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“공공단체”는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.

- 즉, 타 지역 조례 사례에 비추어 보면, 현행 충청도의 위·수탁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은 인정될 수 있음.

-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에 규정된, “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,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”는 경영원칙에 비추어 볼 때, 단지 공사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위·수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됨.
 - 따라서, 현 시점에 충북개발공사의 위·수탁 범위를 “공공기관”과 “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”까지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 추가 설명이 요구됨.

< 참고자료 : 타 시도 개발공사 조례상 위탁사업 범위 >

조례명	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	비고
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	제2조 제1항 1.~ 13.<생략> 14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5.<생략>	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1조 제1항 1. 17.<생략> 17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	충북과 동일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7조 1.~9.<생략> 10. 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	
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	제24조 1.~16. <생략> 17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.~19.<생략>	
대전도시공사 조례	제2조 1.~14.<생략> 1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6.~17.<생략>	
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제2조 10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	
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제19조 1.~8.<생략>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	
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·운영조례	제19조 1.~5.<생략> 6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	
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	제19조 ① 공사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·수탁 계약에 의한다.	
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	제20조 제1항 1.~8.<생략>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.~15.<생략>	
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	제20조 제1항 1.~14. <생략> 15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 16.~17.<생략>	
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	제21조①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	
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	제20조 제1항 1.~16.<생략> 1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.~25.<생략>	

< 참고자료 : 타지역 출자·출연기관 위수탁 현황 >

조 례 명	사업범위에 관한규정	위수탁 사례
경남개발공사 설치조례	제20조 제1항 1.~16.<생략> 1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.~25.<생략>	- 경남 마산의료원(경남출연기관) 신축사업 - 경남 발전연구원(경남출연기관) 신축사업
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	제20조 제1항 1.~8.<생략> 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.~15.<생략>	-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센터(전북출연기관) 건축 - 남원의료원(전북 출연기관) 간호사 기숙사 및 장례식장 건축